

서울고등법원 2026년 4월 선고 중요 판결 · 결정

민 사

2025나208163 예약권침해금지청구

확정

[제33민사부 2026. 4.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모집약관에 ‘클럽은 회원의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에 따라 회원에게 예약 우선권 등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규정을, 회칙에 ‘평일회원은 주중에 클럽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요일 「4주전 D - 2 ~ 2일」 전까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골프클럽의 평일회원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또한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에 피고에게 예약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만을 근거로 회원별 예약 우선권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약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

☐ 쟁점

- 이 사건 회칙 및 모집약관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모집약관 조항에는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전년도 이용실적 및 에티켓 점수만을 기준으로 예약 우선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가 회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회칙 조항은 ‘클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상 평일회원 누구나 등급과 관계없이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사건 모집약관 및 회칙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객관적이고 확일적인 해석임
- 원고 패

[제38-3민사부 2026. 4. 24. 선고] <민사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2022. 9. 30.까지 원고에게 A가상화폐 2억 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위 이행기보다 변론종결일에 가상화폐 시가가 70% 가량 떨어지자 원고가 위 가상화폐의 인도와 더불어 시가하락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 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특별손해)

□ 판단

-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시가가 등락할 수 있고, 그 가격은 여러 다양한 요인(국제적 경제 상황과 각국의 규제 동향, 관련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상황,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정부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가 변동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따라서 채무자가 가상화폐 인도 의무를 지체하던 중 시가가 하락하였라도 이것이 이행지체 시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움
- ① 신생 가상화폐는 유동성이 낮아 단기간에 시가가 큰 폭으로 등락할 수 있고 ② 가상자산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시세 변동 상황에 따라 즉시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③ 원피고가 가상자산 유통, 판매하는 전문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가 유통하는 A가상화폐를 홍보·판매하는 역할을 하다가 퇴사하여 가상화폐 관련 사업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A가상화폐의 가격 등락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는 의사를 가졌을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점을 예견할 수 있는 점, ④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높고 가격 하락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 채무를 불이행한 데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손해를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가상자산에 내재된 특성과 사건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A가상화폐를 인도받으면 단기간에 이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일부 제한함)
- 원고 일부승

[제40민사부 2026. 4. 8. 자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채무자 등이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고, 자본지원, 후순위 및 보유계약(이하 ‘ESSRA’)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음
- 채권자는 위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
- 채권자는 주위적으로 중재판정에서 명한 필요한 모든 조치의 일부로서 담보부 계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 부분에 한정하여 그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중재판정 주문과 동일한 내용의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를 구하였음

□ 쟁점

- 중재판정 주문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적극)
- 중재판정 주문에 표시된 의무 중 일부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함
- 중재판정 주문은 ① 담보부 계좌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및 ②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취하여야 할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상 위 ②항 부분은 위 금액을 담보부 계좌로 지급할 의무로 특정할 수 있고, ESSRA상 주식을 인수하거나 후순위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중재판정 주문에서 그 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채무자 등에게 의무를 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절차에 관한 회사의 정관이 보충되어야만 위 ②항 부분의 내용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 의무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로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음. 위 ②항 부분은 중재판정 주문에 표시된 의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그 내용에 한정하여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음
- 항고 인용

형 사

2025노2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반> 확정

[제13형사부 2026. 4. 9.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4조 제4항 소정의 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툼

☐ 쟁점

- 폭처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의 의미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처법 제4조 제4항의 금품 ‘모집’이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본인이 지급한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음

① 본건 조항의 ‘모집(募集)’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으로 그 정의 자체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객체를 취득하는 외부적 해위를 전제로 함. 자신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폭처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공’에 가까워 보이는데, 폭처법이 ‘모집’과 ‘제공’을 별도 조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이상 이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함

② 본건 조항의 ‘금품 모집’은 그 행위 자체만 보아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호(정의 규정)는 기부금품의 출연 대상이 ‘타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편, 폭처법에 ‘모집’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품상 ‘모집’과 달리 ‘자신’이 제공한 금품도 본건 조항의 ‘모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등에 해당함

③ 결국 본건 조항이 규정하는 ‘모집’에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특히 그로부터 파생되는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다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함

- 항소인용(일부 이유무죄)